Section 10L: 2024년 이후의 해외 원천 처분이득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Section 10L은 소득세(개정)법 2023(Income Tax (Amendment) Act 2023)에 의해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해외원천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유해한 특징으로 지목한 유럽연합 행동강령그룹(Code of Conduct Group)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입니다. 이 조항은 싱가포르에 적정한 경제적 실체가 없는 „관련 법인(relevant entity)“이 해외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에서 얻은 이득을 싱가포르로 수령하는 경우, 이를 section 10(1)(g)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지식재산권의 처분이득은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1]

적용 대상

이 조항은 „관련 그룹(relevant group)“의 구성원인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그룹 소속 법인 중 적어도 하나가 싱가포르 밖에서 설립, 등록 또는 설치되었거나, 적어도 하나의 법인이 싱가포르 밖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그 그룹은 관련 그룹입니다. 그룹 구성원 여부는 회계기준상의 연결에 따릅니다. 어떤 법인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면 그 법인은 구성원입니다.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또는 매각예정이라는 이유로만 제외된 경우에도 구성원으로 남습니다.[2] 단독 법인과 순수한 국내 그룹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스위스 AG가 소유한 싱가포르 Pte Ltd는 관련 그룹에 속합니다. 해외 계열사가 없는 싱가포르 개인이 소유한 싱가포르 Pte Ltd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은 결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ection 10L은 법인에 적용되며, 거주자 개인은 어차피 section 13(7A)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스위스–싱가포르 그룹의 싱가포르 지주회사, 재단이 추크에 있는 프로토콜의 싱가포르 트레저리 회사, 그리고 해외 설립 자회사나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에 중요합니다. Section 13O 또는 13U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를 받는 싱가포르 펀드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대상 법인은 인센티브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한 처분에 대해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정 금융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3]

해외자산의 의미와 이득의 수령 시점

해외자산이란 처분 시점에 싱가포르 밖에 소재하는 모든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주요 자산 유형에 대한 소재지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소재지, 주식은 회사의 설립지, 그 밖의 동산은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소유자의 거주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봅니다.[4] 디지털 자산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 규칙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소유한 토큰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므로 해외자산이 아니며,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사의 토큰 이득은 section 10L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해석은 매력적이며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외 회사의 주식을 나타내는 토큰(토큰화된 주식 또는 증권형 토큰)은 그 주식의 소재지를 따르며, 해외 부동산을 나타내는 토큰이 그 토지의 소재지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B편 제III장의 성격 결정 작업은 토큰화된 실물자산에 대해 section 10L상의 조세 효과를 갖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득은 section 10(25)의 의미에서 „싱가포르로 수령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스위스 자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취리히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싱가포르 지주회사는 아직 이득을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금이 송금되거나, 싱가포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싱가포르로 반입되는 동산의 구입에 사용되는 순간 이득은 수령된 것이 되며, 실체가 없으면 17%로 과세됩니다. 이로써 납세자가 갖게 되는 시기 조절 수단은 실재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싱가포르 은행과 감사인은 자금을 왜 역외에 두는지 물을 것이고, 경제적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실체 요건

처분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싱가포르에서 적정한 경제적 실체를 갖춘 법인은 section 10L의 적용을 벗어납니다. 이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순수 지분보유법인(pure equity-holding entity)은 주식 보유만을 기능으로 하고 그 소득이 배당과 처분이득인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그 운영이 (자체 직원에 의해서든 외부 위탁업체에 의해서든) 싱가포르에서 관리·수행되며, 싱가포르에 적정한 인력과 사업장을 갖추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등록 사무소 주소만으로는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명목상 이사가 아닌 싱가포르 거주 이사는 인력에 포함됩니다.[5] 그 밖의 법인은 그 운영이 싱가포르에서 관리·수행되어야 하며, 상근 직원의 수와 자격, 싱가포르 내 사업 지출 규모, 주요 경영 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수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계회사에 대여도 하는 싱가포르 지주회사는 순수 지분보유법인이 아니므로 요건 중 더 엄격한 갈래의 적용을 받습니다. 토큰을 보유하면서 계열사에 자금도 제공하는 많은 프로토콜 트레저리 회사가 이 점에서 걸려듭니다. 외부 위탁업체 방식은 가족 지주 구조에 유용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서비스 회사가 „운영“과 사업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의 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사례

추크의 한 재단이 케이맨제도 운영회사의 주식과 토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싱가포르 Pte Ltd를 지배합니다. 2026년에 싱가포르 회사는 케이맨 주식을 1,200만 미국달러에 매각하고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400만 미국달러를 싱가포르로 송금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관련 그룹(해외 모회사)에 속합니다. 케이맨 주식은 해외자산(싱가포르 밖에서 설립)입니다. 이득은 일부가 싱가포르로 수령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른 6개 회사의 이사도 겸하는 거주 이사가 1명 있고, 회사비서의 주소를 사용하며, 직원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회사는 실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송금된 이득 부분은 17%로 과세되는 소득이 됩니다. 회사가 싱가포르에 직원 2명을 두고, 사무실을 임차하며, 투자 결정을 그곳에서 의사록에 기록한다면 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체를 갖추는 비용은 세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펀드 인센티브 및 사전 세무 판단과의 관계

Section 13D, 13O 또는 13U에 따라 승인된 펀드는 인센티브 대상 사업 과정에서 한 처분에 대해 section 10L의 적용이 제외되며, 이로써 인센티브가 유지됩니다. 예컨대 운용자산이 요구되는 최저 수준 아래로 떨어져(이 편 제IV장 참조) 어느 해에 인센티브 지위를 잃은 펀드는 적용 제외도 함께 잃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싱가포르 피더 회사나 지주회사가 포함된 펀드 구조는 그 법인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IRAS는 section 10L의 적용에 관한 사전 세무 판단(advance ruling)을 제공합니다. 처음 2년간의 실무를 보면 IRAS는 영업의 징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 태도로 실체 요건을 적용합니다. 사전 판단에는 수수료가 들고 몇 주가 소요되지만, 대규모 처분 전에는 받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6]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Income Tax Act 1947, s. 10L(해외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 이득), Income Tax (Amendment) Act 2023에 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 IRAS, e-Tax Guide *Tax Treatment of Gains or Losses from the Sale of Foreign Assets*, 2023년 12월 초판도 참조. ↩
2. Income Tax Act 1947, s. 10L(1) 및 (2)(„entity“, „group“ 및 „relevant group“의 정의); DLA Piper, *Section 10L: Singapore tax treatment of foreign-sourced capital gains*, 2023년 12월 14일자 고객 안내문. 연결 기준 그룹 판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3. Income Tax Act 1947, s. 10L(10) 및 지정 금융기관과 특정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소득이 면세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에 대한 관련 적용 제외. ↩
4. Income Tax Act 1947, s. 10L(14)–(15)(재산이 싱가포르 밖에 소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재지 규칙). ↩
5. Income Tax Act 1947, s. 10L(6)–(8)(순수 지분보유법인 및 기타 법인에 대한 경제적 실체 요건); IRAS, e-Tax Guide *Tax Treatment of Gains or Losses from the Sale of Foreign Assets*, 경제적 실체 요건에 관한 절. ↩
6. Income Tax Act 1947, s. 108 및 Seventh Schedule(사전 세무 판단); IRAS, *Advance Ruling System for Income Tax*, 수수료 및 절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